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정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상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30.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지진 및 화산”을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한다.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망 구축·운영

5의2.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수집·분석·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국가 지진정보체제의 구축·운영

제17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9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30”을 “428”으로 하고, 일반직 계 “429”를 “4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17”을 “415”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81”을 각각 “67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665”를 “66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표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 정원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9조 관련)

제29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8급 이하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지진화산국) ① (생략)	제13조의2(지진화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 구축·운영 및 자료의 수집·분석·관리</u>	5. <u>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망 구축·운영</u>
<신설>	5의2. <u>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수집·분석·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신설>	7의2. <u>국가 지진경보체제의 구축·운영</u>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10. <u>지진 및 화산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관리</u>	10. <u>지진·지진해일·화산</u> ----- -----
제17조의2(직무) ① (생략)	제17조의2(직무)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9조(한시정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u>	제29조(한시정원) ----- ----- ----- ----- ----- ----- <u>2024</u>

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년 12월 31일----- ----- -----.
--	-----------------------------------

[별표 2]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u>430</u>	· <u>428</u>	-2
	·				
	·				
일반직 계			<u>429</u>	<u>427</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17</u>	<u>415</u>	-2
	·		·	·	
	·		·	·	

[별표 3]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u>681</u>	· <u>678</u>	-3
일반직 계			<u>681</u>	<u>678</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65</u>	<u>662</u>	-3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연 락 처	(044) 205 - 2357